공 개

의안번호	제 319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11. 1. (제 19 차)

의결사항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1. 1.

1. 의결주문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한 행위,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2억70백만원, 과태료 1억39.6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2023.6.14.) 심의필

○ 제19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3.10.26.) 심의필

< 별지 >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2억70백만원, 과태료 1억39.6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xx.x.xx. 차주 ♧♧♧에게 본인 및 ♥♥♥♥♥♥(대표이사 : ♧♧♧)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X건, xx.x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xx.x억원('xx.x월말 자기자본 xx,xxx억원의 x.xx%) 초과하였음**

*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대출 x.x억원, ♥♥♥♥♥♥ 명의 x.x억원

** 차주 ♧♧♧은 대출금을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가계대출 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

<관련법규>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나.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됨에도,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대출잔액이 0인 종합통장대출의 대출약정 만기시에 약정해지나 만기연장이 없는 경우 이를 연체로 잘못 간주하여 20xx.xx.xx.~20xx.x.x. 기간 중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정상 차주 xx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XX건)하였음

<관련법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항

다.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1일당 예금등의 해지·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월말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xx.x.xx4.~20xx.x.xx. 기간 중 XX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사유(최소 x.xxx%p, 최대 x.xxx%p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관련법규>

1.「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
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7조
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

(붙임 1)

관 계 법 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 ③ (생 략)

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⑧ (생 략)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위험관리 기준

5. (생 략)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 5. (이하 생 략)

[별표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조 제1항 관련)
34.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제3호·제4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나. ~ 다. (생 략)
2. ~ 3. (생 략)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신고 사항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0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당** 예금등의 해지·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다만, 예금등의 해지·인출 등의 사유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지급액에서 제외**한다.
2. (생 략)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 2. (생 략)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8억원

제11조의7(경영건전성의 기준) ① ~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하는 위험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2.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⑤ ~ ⑦ (생 략)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위반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나.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②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4항제1호	600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보고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사유발생일 전월말** 현재의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예금등의 **계약만기에 따른 지급액**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1건의 지급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의2(여신업무 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3.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과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9>와 같다.

<별표 9>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자기자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이라 한다)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날로 한다.

다. 과징금을 부과 받을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의“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는 기준일의 최직근 결산일의 재무상태로 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별도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명 내역을 적용할 수 있다.

(1)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법인인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로서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
(3) 과징금부과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의해 개인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된 내역

마.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있고, 해당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감독기관의 인지’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의 종합검사, 부문검사, 현장검사, 서면검사, 상시 감시, 및 제보, 언론 보도 등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이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등을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단, 검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인지시점은 검사명령의 사전통지를 한날로 간주하고 긴급한 소요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로 간주한다.

사. “위반행위의 시정”은 법제38조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경우 한도초과여신의 상환을 의미하고 법 제38조의2 제1호 다목 및 제3호의 경우 위반여신의 상환을 의미한다.

아. “부당이득”은 법 제38조의2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법정부과한도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과징금부과대상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요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위반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전의 위반금액에 추가 확인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종 산정된 과징금에서 차감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각기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 최고 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과징금의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영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적용을 받는 위반행위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적용한다.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1단계	2억원 이하	× 7/10
2단계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20
3단계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7/40
4단계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 7/80
5단계	2천억원 초과	× 7/160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1단계 기본부과율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 ＋(법정부과한도액－2억원)×2단계 기본부과율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 ＋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 ＋(법정부과한도액－2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 ＋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 ＋18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 ＋(법정부과한도액－200억원)×4단계 기본부과율
2천억원 초과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 ＋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 ＋18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 ＋1,800억원×4단계 기본부과율 ＋(법정부과한도액－2천억원)×5단계 기본부과율

6.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 후 과징금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또는 0.2%**

* 364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364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4일 초과일수에 적용

(2) 최근 3년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38조의2 제1호 가목, 제2호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시정범위	시정시점	감경기준
전부시정 (한도초과 전액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50% 감경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일부시정 (한도초과액의 50% 이상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5% 감경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최근 3년이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법 제38조의2 제1호 다목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과징금이 병과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의 50%이상을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6) 법 제38조의2 제3호 위반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경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100분의 25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7.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유예조치포함) 또는 경영개선요구(유예조치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또는 경영개선명령유예의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현저히 하락하여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과징금부과대상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38조의2 제3호 과징금의 경우 대주주 등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준일 현재 대주주 등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어 대주주 등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라. 기 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벌금·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란 판결의 확정 및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완료를 의미한다.
(3) 단순오류, 경미한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조정 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할 수 있다.

8.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가. 판단기준

법 제38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 부과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 예금인출 사태 등 상호저축은행 정상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 과징금 납부 등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대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유에 처한 경우

(5) (1)~(4) 에 준하는 사유로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9. 2014년 2월 14일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당시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를 적용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조정(기본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후 과징금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하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금액	감경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3초과 100분의 5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0

다. 저축은행이 위반행위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전(검사종료후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시정정도 및 시정시점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면한다.

시정범위	시정시점	감면기준	
		신용공여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전부시정 (한도초과 전액 해소)	감독당국 인지전	과징금 부과 면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감독당국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일부시정 (한도초과액의 50% 이상 해소)	감독당국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감독당국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감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45조(감독·검사 등)

① ~ ⑥ (생 략)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 6. (생 략)

⑧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 략)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 8.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 12. (생 략)
⑥ ~ ⑦ (생 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② (생 략)
③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해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거.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제5호	1,00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변경·관리)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1호의6까지의 신용정보별로 등록·변경·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하 생략)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라. 삭 제 <2004. 12. 30.>

마. 삭 제 <2004. 3. 5.>

8. 삭 제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생 략)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각호 생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④ ~ ⑥ (생 략)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 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 다. (생 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017.10.19>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 (4) 삭 제 <2017.10.19>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 (9) (생 략)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 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저축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93 02-2100-2623	02-3145-7410